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6가합50174(본소), 2019가합60783(반소) 판결
[공사대금 · 하자보수비 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진

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정은영, 김민후, 성정화

변론 종결2020. 3. 25.

판결 선고2020. 4. 2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2,154,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6%, 2020.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1)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14,864,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23,903,6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당초 'C 주식회사'였다가 2016. 3. 10. 그 상호가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국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 피고와 사이에 포천시 D 지상 자동화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공사금액을 1,711,000,000원으로 정한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공사도급계약서

제1조 [공사내용]

1. 공사명 : (주)B 자동화공장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경기도 포천시 E
 3. 공사기간 : 2015. 4. 30.
 4. 공사금액 1,475,000,000원2) 5. 공사대금 지불방법 : 건축기성(금융) 결재방식으로 한다.
- 계약금 : 147,500,000원 계약시 지불.

제4조 [설계변경 등]

본 공사의 시공 도중 설계상의 변경이 있을 시 "갑"과 "을"의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추가공사의 정산]

1. "을"이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갑"이 작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거나 재변경으로 인하여 추가 금액이 발생할 때에는 "갑"은 "을"에게 추가로 발생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2. 추가로 발생한 금액 산정은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하는 견적서 상의 단가로 하고, 견적서 상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정한다.

제12조 [하자보수]

"을"은 하자 발생시 이를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이를 증명하기 위한 총 공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2015. 9. 30.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 10. 30.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54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채권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추심명령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처분을 받았고, 각 그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1	청주지방법원 2018타채51795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F 외 2명	303,828,556	2018. 4. 25.(2018. 4. 26.)
2	청주지방법원 2018타채55729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주)G	235,605,669	2018. 10. 18.(2018. 10. 19.)
3	청주지방법원 2019타채2046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H(주)	44,443,675	2019. 4. 2.(2019. 4. 3.)
4	청주지방법원 2019타채2141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I(주)	89,321,137	2019. 4. 4.(2019. 4. 8.)
5	채권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61,435,510	2019. 4. 8.
6	청주지방법원 2019타채2351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J	72,557,434	2019. 4. 15.(2019. 4. 17.)
7	청주지방법원 2019타채2519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K	57,632,708	2019. 5. 9.(2019. 5. 10.)
8	청주지방법원 2019타채4658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L(주)	365,101,190	2019. 7. 22.(2019. 7. 24.)
9	청주지방법원 2019타채6211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M	78,042,332	2019. 10. 2.(2019. 10. 7.)

1	청주지방법원 2018타채51795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F 외 2명	303,828,556	2018. 4. 25.(2018. 4. 26.)
합계	1,307,968,21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본소청구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하였고, 감정인 N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금액은 496,163,389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1,622,500,000원)에 추가공사비용(496,163,389원)을 더하고, 하자 및 미시공된 부분의 공사비용(82,154,468원)을 공제한 2,036,508,921원 중 피고가 기지급한 1,547,500,000원을 뺀 미지급 공사대금 489,008,9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위 미지급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 상당액을 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89,008,921원 중 감정인 N의 감정 결과에 따라 산출된 노무비에 해당하는 114,864,44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자들에 의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추심권한을 상실한 원고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한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추심명령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처분을 받아 각 그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처분을 받은 채권자들의 청구금액 합계액이 1,307,968,211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총액은 위 각 압류·추심채권 등의 청구금액 합계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채권자들의 압류·추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의 추심권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114,864,447원은 감정인의 N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중 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 2항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감정인 N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중 노무비 114,864,447원의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추가공사 부분에 대한 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계약서에 노임이나 노무비 명목으로 위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으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의 추심권능을 상실하여 위 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공장 건물에는 불량시공, 미시공, 변경시공 등 다수의 하자(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그 중 일부 하자를 직접 보수하였다. 감정인 O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하자 중 기보수 비용을 포함한 불량시공 하자보수비용은 67,153,043원, 미시공 하자보수비용은 151,043,668원, 변경시공 하자보수비용은 5,706,948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을 하자보수비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이하 '하자보수비'라고만 한다)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 O이 증거보전절차에서 한 이 사건 하자에 대한 감정은 당시 하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하자의 정도 및 보수범위를 검토한 것이므로 이를 충분히 믿을 만하다. 반면 감정인 N의 감정 결과는 감정인 O의 감정 결과에 대한 원고의 주장만을 주로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위 하자감정으로부터 2년 6월 이상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문제된 하자의 상당 부분을 이미 피고의 비용으로 보수하여 그 현황이 변경된 이후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감정인 O의 감정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주장 감정인 O의 감정 결과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위 감정 결과 중 오류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감정인 N이 한 재감정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하자보수비를 산정할 경우 그 금액은 합계 82,154,468원(= 불량시공 하자 41,063,701원 + 미시공 하자 33,622,179원 + 부가세 7,468,588원)에 불과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기20016 증거보전 신청사건에서의 감정인 O의 감정 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원감정 결과'라 한다), 감정인 N의 감정 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재감정 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감정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증거보전절차에서 감정인 O은 이 사건 공장의 하자를 감정하였다. 이 사건 원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하자보수비는 합계 223,903,659원(= 불량시공 하자보수비 67,153,043원 + 미시공 하자보수비 151,043,668원, 변경시공 하자보수비 5,706,948원)으로 산정되었다.

2) 원고는 위 감정 결과에 대하여 '감정인의 보완 감정내용을 보더라도 추가공사, 하자, 미시공 등의 공사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추가공사와 관련한 부분이 누락되었으며, 미시공이나 하자의 경우 계약서와 다른 방식으로 공사금액이 산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감정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가 공사금액이나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20. 재감정을 신청하였다.

3) 위와 같이 원고의 재감정 신청에 따라 감정인 N에 의하여 이 사건 재감정이 이루어졌다[당초의 재감정에서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추가공사의 존부 및 추가공사금액'만이 대상이 되었는데, 원고는 2018. 3. 14. 이 사건 원감정 결과 중 일부 하자 항목(이하 재감정된 하자의 각 항목을 '이 사건 재감정 항목'이라고 한다)에 대한 보완감정을 신청하였다].

4) 이 사건 재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재감정 항목에 관한 감정인 N의 의견은 별지1 표 각 '감정인 의견'란 기재와 같고, 그에 따라 산정된 해당 하자보수비는 별지2 표 각 '공사비'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재감정 항목에 관한 판단

1)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18949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이 사건 원감정 및 재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하자는 원고의 추가공사 인정 여부 및 그 범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바, 감정인 N은 원감정 결과 및 위 추가공사 부분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재감정 항목을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감정인 ○ 스스로도 원고가 보완감정을 요청한 상당수의 항목에 대하여 '피고 제출 자료에 의거 산정한 것'이라거나, '현장조사시 항변이 없던 사항, '현재 확인 못한 사항'이라는 등의 이유로 '다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던 점, 그 밖에 앞서 본 이 사건 원감정 및 재감정 경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감정 항목에 관한 하자 여부의 판단 및 그에 따른 하자보수비는 이 사건 재감정 결과에 따라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이 사건 재감정 항목의 하자 인정 여부는 별지1 표 각 '감정인 의견'란 기재와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장에 이 사건 재감정 항목에 관하여 별지1 표 각 '구분'란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하자보수비로 별지2 표 각 '공사비'란 기재와 같이 합계 48,127,397원(= 불량시공 하자 10,130,000원 + 미시공 하자 33,622,179원 + 부가가치세 4,375,218원, 원 미만 반올림한다)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재감정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이하 '이 사건 잔여 항목'이라 한다)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장에 이 사건 잔여 항목에 관하여 별지3 표 각 '구분'란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하자보수비로 같은 표 각 '공사비'란 기재와 같이 합계 34,027,071원(= 불량시공 하자

30,933,701원 + 부가가치세 3,093,370원)이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미시공 등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2,154,468원3) (= 이 사건 재감정 항목 하자보수비 48,127,397원 + 이 사건 잔여 항목 하자보수비 34,027,0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하자감정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일인 2016. 3. 23.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경희

판사김동현

판사신은진

별지

1) 원고는 2019. 11. 13. 본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본소취하에 부동의하였고, 이후 원고는 현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별다른 구분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면 기본공사대금 1,232,000,000원, 추가공사대금 243,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위에서 판단한 하자 항목을 모두 반영한 결과이다. 감정 결과와 재감정 결과가 중복되는 이 사건 재감정 항목 부분에서는 재감정 결과를 반영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부분에서는 원감정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